

제409회 임시회

'23. 6. 9.(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3. 제안사유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 사회복지 관련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청소년지도자 적정 보수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240여 명이 활동 중임.
- 충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시설 유형별로 여성가족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청소년지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놓여 있음.
- 청소년지도자의 낮은 처우는 비단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며,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처우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처우는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청소년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도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상 문제가 없음.
- 안 제5조는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사한 계획의 중복 수립이나 유사한 내용의 중복 명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모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적정 보수 체계 마련에 관한 규정임.
 - 현재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유형별로 보수 체계가 달라 도내 청소년지도자들마다 다른 처우에 놓여 있고,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월 10만원에 그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정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본 조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도지사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근무 환경 개선 사업 등은 청소년지도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이라 보여지며, 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신설 2015. 2. 3.)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책무를 강화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청소년지도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도내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2023년도 청소년지도자 및 사회복지사 보수 기준표**

□ 2023년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사자 기본급 기준표

(출처 : 2023년 청소년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호 봉	센터장	팀 장	팀 원
1	2,766,460	2,409,250	2,048,030
2	2,823,650	2,458,820	2,097,580
3	2,877,790	2,506,140	2,144,920
4	2,950,440	2,569,570	2,192,430
5	2,989,320	2,603,410	2,241,990
6	3,043,860	2,650,760	2,289,320
7	3,113,930	2,711,760	2,337,050
8	3,181,340	2,770,500	2,397,840
9	3,251,200	2,831,280	2,445,360
10	3,321,250	2,892,450	2,494,930
11	3,404,400	2,964,670	2,567,350
12	3,487,330	3,036,860	2,639,550
13	3,570,050	3,109,250	2,711,760
14	3,653,190	3,181,460	2,783,930
15	3,736,130	3,253,680	2,856,350
16	3,805,940	3,314,470	2,915,090
17	3,873,640	3,373,190	2,975,890
18	3,943,730	3,434,400	3,036,860
19	4,013,570	3,495,180	3,095,620
20	4,080,940	3,553,900	3,136,210
21	4,137,900	3,603,510	3,206,130
22	4,192,510	3,651,210	3,253,680
23	4,246,820	3,698,550	3,300,980
24	4,304,000	3,748,100	3,350,570
25	4,358,350	3,795,640	3,398,300
26	4,399,830	3,831,510	3,459,090
27	4,441,530	3,867,820	3,495,180
28	4,482,770	3,903,710	3,531,260
29	4,524,440	3,940,240	3,567,400
30	4,565,870	3,976,140	3,603,510

□ 2023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출처 :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여성가족부)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777,300	2,527,300	2,363,600	2,058,100	1,948,100	1,883,700	1,860,400
2	2,880,200	2,630,700	2,459,200	2,153,800	2,032,900	1,919,200	1,879,800
3	2,985,900	2,735,500	2,558,200	2,252,900	2,127,000	1,970,600	1,909,900
4	3,092,600	2,842,800	2,661,300	2,353,700	2,225,600	2,029,100	1,959,100
5	3,201,000	2,951,600	2,767,100	2,457,600	2,327,600	2,091,300	2,015,900
6	3,310,200	3,061,500	2,875,100	2,564,400	2,432,300	2,187,900	2,069,800
7	3,420,900	3,172,300	2,984,500	2,671,500	2,537,900	2,284,800	2,132,200
8	3,531,800	3,283,900	3,095,400	2,778,900	2,643,800	2,377,700	2,200,500
9	3,643,900	3,395,600	3,206,600	2,886,900	2,744,600	2,466,600	2,264,000
10	3,755,700	3,507,100	3,318,900	2,987,800	2,841,100	2,550,500	2,324,500
11	3,867,700	3,619,800	3,423,400	3,083,700	2,931,800	2,631,900	2,385,000
12	3,983,900	3,725,700	3,524,400	3,178,000	3,020,900	2,711,400	2,453,500
13	4,091,700	3,824,900	3,620,200	3,267,000	3,105,700	2,787,800	2,524,300
14	4,191,900	3,917,500	3,709,800	3,350,800	3,186,800	2,860,600	2,593,000
15	4,284,100	4,004,500	3,794,100	3,431,500	3,264,000	2,930,700	2,658,600
16	4,370,300	4,086,700	3,873,700	3,506,800	3,337,400	2,998,400	2,722,300
17	4,450,300	4,163,000	3,948,400	3,579,000	3,407,600	3,061,600	2,784,300
18	4,524,500	4,234,300	4,019,000	3,647,100	3,474,800	3,122,900	2,842,200
19	4,593,400	4,300,900	4,085,400	3,711,700	3,537,800	3,181,800	2,899,100
20	4,657,800	4,362,900	4,147,600	3,772,500	3,598,100	3,237,900	2,953,300
21	4,717,500	4,421,100	4,206,200	3,831,000	3,655,600	3,291,500	3,004,400
22	4,772,700	4,475,800	4,261,300	3,886,100	3,710,000	3,343,000	3,053,500
23	4,823,600	4,527,100	4,313,400	3,937,800	3,762,400	3,391,800	3,100,200
24	4,871,100	4,575,200	4,361,800	3,986,900	3,812,400	3,439,000	3,145,200
25	4,910,400	4,619,300	4,407,800	4,033,800	3,859,500	3,483,800	3,188,200
26	4,947,700	4,656,600	4,451,000	4,077,900	3,904,700	3,527,400	3,226,700
27	4,982,300	4,691,100	4,486,900	4,119,800	3,943,000	3,563,600	3,260,100
28	5,014,600	4,724,100	4,521,500	4,155,100	3,978,600	3,598,600	3,292,300
29	5,036,500	4,765,900	4,553,100	4,188,000	4,013,200	3,631,500	3,323,100
30	5,048,100	4,787,900	4,583,700	4,220,700	4,046,000	3,663,500	3,353,400
31	-	4,816,200	4,612,200	4,250,800	4,076,900	3,694,700	3,382,900

□ 202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출처 : 2023년 청소년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구분	센터장(상근)	팀장	팀원	행정원
1호봉	2,423,800	2,237,100	2,105,100	2,010,600
2호봉	2,492,300	2,286,700	2,147,200	2,031,000
3호봉	2,561,900	2,337,500	2,189,700	2,051,500
4호봉	2,631,300	2,388,900	2,231,900	2,072,100
5호봉	2,699,700	2,447,200	2,274,300	2,094,900
6호봉	2,768,300	2,506,800	2,316,900	2,122,700
7호봉	2,834,400	2,563,000	2,362,500	2,150,900
8호봉	2,900,400	2,619,100	2,409,800	2,179,300
9호봉	2,966,400	2,674,100	2,457,000	2,207,900
10호봉	3,032,400	2,729,300	2,504,200	2,236,600
11호봉	3,097,400	2,783,200	2,550,500	2,269,900
12호봉	3,162,300	2,837,200	2,596,600	2,305,600
13호봉	3,227,200	2,890,100	2,642,700	2,340,100
14호봉	3,292,200	2,943,000	2,687,800	2,373,700
15호봉	3,357,100	2,994,800	2,733,000	2,406,100
16호봉	3,420,900	3,046,600	2,778,100	2,438,600
17호봉	3,484,900	3,097,300	2,822,200	2,470,200
18호봉	3,548,700	3,148,100	2,866,100	2,501,600
19호봉	3,612,500	3,194,700	2,907,300	2,532,000
20호봉	3,676,400	3,241,000	2,947,400	2,562,400
21호봉	3,736,000	3,286,300	2,987,200	2,591,700
22호봉	3,795,500	3,331,400	3,027,100	2,621,200
23호봉	3,849,500	3,372,100	3,062,700	2,649,500
24호봉	3,897,200	3,412,600	3,098,200	2,677,900
25호봉	3,942,600	3,451,900	3,133,600	2,705,000
26호봉	3,978,000	3,487,300	3,164,700	2,732,300
27호봉	4,013,300	3,522,800	3,195,400	2,758,600
28호봉	4,047,900	3,556,800	3,226,000	2,784,800
29호봉	4,081,700	3,590,800	3,255,300	2,811,000
30호봉	4,115,400	3,623,300	3,284,400	2,837,100

※ 다음의 기본급 기준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23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단, 조정 시 가이드라인보다 낮게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

□ 202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출처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직위 (호봉)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사회,노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호봉	2,727,800	2,575,500	2,455,500	2,267,000	2,159,800	2,073,500	2,042,900	
2호봉	2,820,800	2,659,900	2,534,600	2,323,200	2,211,400	2,112,400	2,091,800	
3호봉	2,916,400	2,755,700	2,627,000	2,385,000	2,274,100	2,151,100	2,127,100	
4호봉	3,024,800	2,849,500	2,721,600	2,482,000	2,336,500	2,206,900	2,178,500	
5호봉	3,148,900	2,956,700	2,823,500	2,584,800	2,399,500	2,265,300	2,232,000	
6호봉	3,278,800	3,073,400	2,938,000	2,691,000	2,487,200	2,323,300	2,296,400	
7호봉	3,408,500	3,189,700	3,052,200	2,801,700	2,576,600	2,410,000	2,385,400	
8호봉	3,542,700	3,323,700	3,168,700	2,912,900	2,671,000	2,505,300	2,472,700	
9호봉	3,677,900	3,457,800	3,301,600	3,020,900	2,770,100	2,595,000	2,546,200	
10호봉	3,806,400	3,588,500	3,433,200	3,136,000	2,861,500	2,673,300	2,627,400	
11호봉	3,934,800	3,708,000	3,556,100	3,242,300	2,952,800	2,742,900	2,690,600	
12호봉	4,061,000	3,816,400	3,663,300	3,338,400	3,034,300	2,802,800	2,754,000	
13호봉	4,169,400	3,912,700	3,757,400	3,422,300	3,112,600	2,860,200	2,803,800	
14호봉	4,258,000	4,003,100	3,850,900	3,503,800	3,187,400	2,918,900	2,848,200	
15호봉	4,347,300	4,089,100	3,944,900	3,581,900	3,259,100	2,979,600	2,902,400	
16호봉	4,431,800	4,171,600	4,028,700	3,655,700	3,328,100	3,045,600	2,952,600	
17호봉	4,511,000	4,241,200	4,101,300	3,726,000	3,393,000	3,111,200	3,000,700	
18호봉	4,585,900	4,312,800	4,174,200	3,794,300	3,455,600	3,173,700	3,057,700	
19호봉	4,656,000	4,381,100	4,239,100	3,854,600	3,513,600	3,229,900	3,113,700	
20호봉	4,718,600	4,445,900	4,301,900	3,914,900	3,570,200	3,284,700	3,170,200	
21호봉	4,780,100	4,504,100	4,363,400	3,970,600	3,622,800	3,334,000	3,220,400	
22호봉	4,839,200	4,559,000	4,420,000	4,024,500	3,672,700	3,383,700	3,266,000	
23호봉	4,894,400	4,613,800	4,474,000	4,075,700	3,720,600	3,429,100	3,318,300	
24호봉	4,946,400	4,666,300	4,524,400	4,120,800	3,766,500	3,473,900	3,362,700	
25호봉	4,997,100	4,714,400	4,574,700	4,165,700	3,810,500	3,516,400	3,409,300	
26호봉	5,038,700	4,761,200	4,618,500	4,209,400	3,853,700	3,555,500	3,450,900	
27호봉	5,081,000	4,801,600	4,659,800	4,246,300	3,888,800	3,589,000	3,484,500	
28호봉	5,117,900	4,833,100	4,696,700	4,278,800	3,920,800	3,617,200	3,507,800	
29호봉	5,146,200	4,862,400	4,727,900	4,309,200	3,950,400	3,644,200	3,526,700	
30호봉	5,170,000	4,892,800	4,760,700	4,337,400	3,976,500	3,669,600	3,545,800	
31호봉		4,905,100	4,781,300	4,365,300	4,006,900	3,699,000	3,567,300	